

한미약품 정보보호 선언문

의약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한미약품 및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이하 '회사')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위협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직원은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해킹, 정보의 유출 등 수많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선포한다.

우리가 보호해야할 정보 자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관련 정보

둘째, 고객 및 임직원 개인정보

셋째,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습득한 영업비밀(경영상/기술상 중요 정보)

넷째,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서버 등 정보 자산

다섯째,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업무환경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정보 및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첫째, 개인정보, 의약품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둘째, 정보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제도, 시설을 계획하고 적용한다.

셋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유지를 위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넷째, 정보보호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임직원 및 제3자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정보보호 사고 관리, 사업 연속성 관리, 준거성 만족을 위한 기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첫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 지원한다.

둘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지원한다.

셋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충분하게 지원한다.

넷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업무지침과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위험평가 및 관리 등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보안관리규정은 정보보호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서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특정 관리 조직으로만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든 직원들의 참여와 책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정보보호 규정 및 이에 기반한 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여야 한다.